

Annex

1. Main Text

Chapter	Provisions	English text	Editing Korean texts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2	Art 2.3	...A customs duty does not include <u>any</u> :	...관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Annex2-A/Korea/4011940000	4011940000	4011930000	4011940000
2	Appendix2-A-1/6	Milk or cream powder less than 1.5 percent fat and buttermilk. Milk and cream powder sweetened and unsweetened over 1.5 percent fat (whole milk powder)	분유(지방 1.5퍼센트 미만)와 버터밀크, 분유(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전지분유),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상의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전지분유),
2	Appendix2-A-1/11(a)	...Any person or entity, including a producer group, registered as an importer under the <i>Foreign Trade Act</i> of Korea shall be eligible to apply and to be considered for the allocation of the duty-free quantities.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i>대외무역법상</i> 등록된 자로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i>대외무역법상</i> 수입자로 등록된 자로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	Appendix2-A-1/13	Prepared dry milk <u>and other</u>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기타
2	Appendix2-A-2/3(a)/22043092 Appendix2-A-2/3(a)/22043096	...Additional Note 7...	... 주석 제7호 추가 주 제7호...
2	Appendix2-A-2/3(b)/07099080	Fresh or chilled globe artichokes	송영경퀴(신선 또는 냉장)	구상의 양영경퀴(신선 또는 냉장)
2	Appendix2-A-2/3(b)/08052090	Fresh or dried tangelos, ortaniques, malaquinas and similar citrus hybrids (excl. clementines, monreales, satsumas, mandarins, wilkins and tangerines)	탄젤로, 오르타니쿠스, 말라퀴나스 및 유사 감귤류(신선 또는 건조)(클레멘타인, 몬레알레, 세트수마, 맨더린, 월킹 및 탄제린 제외)	탄젤로, 오르타니쿠스, 말라퀴나스 및 유사한 감귤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여, 클레멘타인, 몬레알레, 세트수마, 맨더린, 월킹 및 탄제린을 제외한다)
2	Appendix2-A-2/3(b)/08061010	Fresh <u>table</u> grapes	포도(신선)	포도(신선, 생식용)
2	Annex2-B/Art 3/(b)/(iii)/(A)	any testing laboratory in the other Party that has concluded voluntary arrangements for mutual acceptance of test reports with one or mor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designated by the importing Party; or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협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협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또는

Chapter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2	Annex2-B/Art 4/2/ (b)/(i)	any testing laboratory in the European Union that has concluded voluntary arrangements for mutual acceptance of test reports with one or mor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designated by Korea; <u>or</u>	대한민국이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유럽연합 내의 모든 시험소	대한민국이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유럽연합 내의 모든 시험소 <u>또는</u>
2	Appendix2-C-2/ table1	<u>CO₂ emissions</u> – Fuel consumption	연료소비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연료 소비율
2	Annex 2-D/Art 2/footnote 2	...which <u>does not establish any obligation</u> to reimburse products at any given price or prejudge the specific outcome of price negotiations주어진 가격으로 제품에 대해 급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창설하거나 약가 협상에서 특정 결과를 예단하지 아니하는...	... 주어진 가격으로 제품에 대해 급여하도록 하는 어떤 의무도 창설하지 않거나, 약가 협상에서 특정 결과를 예단하지 아니하는 ...
4	Art 4.4/1/(b)	to us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technical regulations including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except when such international standards would be an <u>ineffective</u> or inappropriate means for the fulfilment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pursued, and where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not been used as a basis, to explain on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reasons why such standards have been judged inappropriate or <u>ineffective</u> for the aim pursued;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있어 <u>비효율적</u> 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u>비효율적</u> 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있어 <u>비효과적</u> 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u>비효과적</u> 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5	Art 5.8/1 Art 5.8/4	... <u>OIE</u>국제수역사무국...	...세계동물보건기구...
7	Art 7.37/2/(a)/(iv)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 actuarial, risk assessment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u>and</u>	상당,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적인 서비스	상당,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적인 서비스, <u>그리고</u>
7	Art 7.37/2/(b)/(vii)	participation in issues of all kinds of securities, including underwriting and <u>placement</u> as agent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and provision of services related to such issues;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u>매출</u> 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u>모집</u> 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7	Art 7.37/2/(b)/(vi)	trading for <u>own account</u> or for <u>account of customers</u> , whether on an exchange, in an over-the-counter market or otherwise, the following: ... (F) other <u>negotiable instruments</u> and financial assets, including bullion;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u>자기계좌</u> 또는 <u>고객계좌</u> 로 거래하는 것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u>양도 가능한 증서</u> 및 금융자산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u>자기계좌</u> 또는 <u>고객계좌</u> 로 거래하는 것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u>유통증권</u> 및 금융자산
7	Art 7.37/2/(b)/(x)	settlement and clearing services for financial assets, including securities, derivative products and other <u>negotiable instruments</u> ;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u>양도 가능한 증서</u> 를 포함하는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u>유통증권</u> 을 포함하는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Chapter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7	Art 7.47/2/(c)	customs clearance services (alternatively 'customs house brokers services') means activities consisting in carrying out on behalf of another party customs formalities, concerning import, export or <u>through transport of cargoes</u> , whether this service is the main activity of the service provider or a usual complement of its main activity;	통관서비스('관세사 서비스'라고도 한다)란,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u>화물의 운송을 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u> 을 말한다.	통관서비스('관세사 서비스'라고도 한다)란,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u>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u> 을 말한다.
8	Art 8.2/3	...shall not introduce <u>any new restrictions</u> <u>새로운 제한을 도입하지 아니하고</u> <u>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하지 아니하고</u> ...
8	Art 8.4/footnote 2/(c)	... <u>any restricted assets</u> ;	... <u>제한된 자산</u>	... <u>모든 규제 자산</u>
9	Annex9/Art 3/3	As regards Korea, this Annex covers BOT contracts of the entities listed in Annexes 1 and 2 of <u>Korea's GPA</u> 1994 Appendix 1 and their corresponding Annexes in any agreement which replaces or amends the GPA 1994, and, further to this, BOT contracts of all local governments ¹ located in Seoul City, Busan City, Incheon City and Gyeonggi-do.	대한민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u>대한민국이 1994년도 정부조달 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u> ,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용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 ¹⁾ 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u>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u> ,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용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 ¹⁾ 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0	Art 10.19/footnote 5/(a)	comply with <i>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1991 of 10 June 1991</i> , or legislation replacing it; or	1991년 6월 10일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및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1991년 6월 10일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10	Art 10.67/1/footnote 27 (footnote 24 in the Korean tex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goods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eans: (a) counterfeit goods, which are: (i) goods, including packaging, bearing without authorisation a trademark identical to the trademark duly registered in respect of the same type of goods, or which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such a trademark, and which thereby infringes the trademark holder's rights;	이 조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위조상품, 즉 1) 포장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특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허가 없이 지닌 상품	이 조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위조상품, 즉 1) 포장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허가없이 지니고 있거나 본질적인 특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10	Art 10.67/3	Any rights or obligations established in the implementation of <u>Section 4</u> of Part III of the TRIPS Agreement concerning the importer shall also be applicable to the exporter or if necessary to the holder ²⁸⁾ of the good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장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 ²⁸⁾ 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 ²⁸⁾ 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Chapter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15	Art 15.8/4	The consultations shall address the compliance of any restrictive measures with paragraphs 3 and 4. All findings of statistical and other facts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F") relating to <u>foreign exchange</u> , monetary reserves and balance of payments shall be accepted and conclusions shall be based on the assessment by the IMF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the external financial situation of the concerned Party.	협의는 제한 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다룬다. 환율,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되는 국제통화기금(이하 "국제통화기금"이라 한다)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수용되어야 하고, 결론은 관련 당사자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	협의는 제한 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다룬다. 외환,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되는 국제통화기금(이하 "국제통화기금"이라 한다)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수용되어야 하고, 결론은 관련 당사자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
Protocol (Originating Products)	Art 12/2/(b)	they have not undergone <u>any operation</u> beyond that necessary...	...필요한 것 이상의 <u>공정을</u>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필요한 것 이상의 <u>어떠한 공정도</u>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Protocol (Originating Products)	Art 22/(d)	proofs of origin prov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materials used issued or made out in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rotocol; <u>and</u>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u>또는</u>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u>그리고</u>
Protocol (Originating Products)	Annexl>Note 5/5.2~5.4	... <u>tolerance</u> <u>최소허용치</u> <u>허용치</u> ...
Protocol (Custom Matters)	Art 14/1/(c)	not affect the European Union provisions govern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u>competent serv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u> and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f any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Protocol which could be of interest to the European Union.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것으로서 유럽연합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 간 전달을 규율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것으로서 유럽연합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유럽집행위원회의 관한 있는 부서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 간 전달을 규율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Protocol (Culture)	Art 1/4 Art 3BIS/(d)	...; <u>and</u>		... <u>그리고</u>

* Protocol (Originating Products) :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 Protocol (Custom Matters) :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 Matters

* Protocol (Culture) :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2. Annexes 7-A, B, C and D

Provisions	English text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1/1/A/a)	BG: ... subject to reciprocity and cooperation with a Bulgarian lawyer.	불 : ...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불가리아 변호사와 공동으로 ...	불 : ... 상호주의 및 불가리아 변호사와 협력을 조건으로 ...
Annex7-A-3/6/A/a)			
Annex7-A-1/1/A/h)	SI: ... <u>epidemiological</u> ... <u>transplants</u> ...	비 : ... <u>피부의학</u> ... <u>수술</u> ...	비 : ... <u>의학(疫學)</u> ... <u>이식</u> ...
Annex7-A-2/6/A/h)			
Annex7-A-1/1/A/i)	UK: Unbound <u>except for</u> veterinary laboratory and technical services supplied to veterinary surgeons, general advice, guidance and information (e.g. nutritional, behaviour and pet care)	영 : 수의외과의에게 공급되는 수의실험 및 수의기술 서비스, 일반자문, 지침 및 정보(예를 들어 영양, 행동 및 애완동물 관리)에 대하여 약속 안 함.	영 : 수의외과의에게 공급되는 수의실험 및 수의기술 서비스, 일반자문, 지침 및 정보(예를 들어 영양, 행동 및 애완동물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 함.
Annex7-A-1/1/A/k)/footnote 7	... is subject to <u>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u>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함.
Annex7-A-2/6/A/k)/footnote 29			
Annex7-A-3/6/A/k)/footnote 7			
Annex7-A-1/1/A/k)/footnote 7	... only the supply of <u>prescription drugs</u> <u>조제약</u> 의 공급만이...	... <u>처방약</u> 의 공급만이...
Annex7-A-2/6/A/k)/footnote 29			
Annex7-A-3/6/A/k)/footnote 7			
Annex7-A-1/1/C/footnote 8	Part of CPC 85201, which is to be found under 1.A.h) Medical and Dental services.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입니다.	1.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입니다.
Annex7-A-1/2/A/footnote 12, 13	(Services relating to the handling ¹² of postal items ¹³ according to the following list of sub-sectors, whether for domestic or foreign destinations:...)	우편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¹² 의 취급 ¹³ 과 관련된 서비스:...	우편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¹² 의 취급 ¹³ 과 관련된 서비스:...
	12) "Handling" refers to activities such as clearance, sorting, transport and delivery.	12) "취급" 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12) "우편 품목" 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송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산업적 운송장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13) "Postal item" refers to items handled by any type of commercial operator, whether public or private.	13) "우편 품목" 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송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산업적 운송장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13) "취급" 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Annex7-A-2/10/A/EU	Participation of private operators in the education network is subject to concession.	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적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를 조건으로 함.
Annex7-A-2/10/E/CZ, SK			
Annex7-A-2/16/D/a)	ES, IE, IT: Economic needs test for <u>intercity</u> bussing services. ... FR : Unbound for <u>intercity</u> bussing services.	서, 아, 이 : <u>시내버스</u> 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실시가 있음. ... 프 : <u>시내버스</u>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 함.	서, 아, 이 : <u>시외버스</u> 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실시가 있음. ... 프 : <u>시외버스</u>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 함.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2/3/footnote 16 (Korean text: footnote 15)	... In particular, ownership o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quity interests in a juridical person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control.	...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Annex7-A-2/4/J/footnote 21			
Annex7-A-2/5/C/footnote 28			
Annex7-A-2/4/P/b)	Manufacture of special purpose machinery other than weapons and munitions (ISIC rev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 2929)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 2929)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 2929)
Annex7-A-2/5/A/footnote 23	Does not include operation of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on a fee or contract basis, which are to be found in ENERGY SERVICES.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전력 운송 및 유통 시스템 은 포함하지 아니함.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운영 은 포함하지 아니함.
Annex7-A-1/1/A/b)/2	SE : ... Only such persons may be shareholders or form partnerships in companies which practice qualified auditing (for official purposes). ...	스 : ... 그러한 감사인만이 주주가 되거나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	스 : ... 그러한 감사인들이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주주가 되거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4/A/ II /2/8/footnote 17 (Korean text: footnote 16)	However,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Service Act allows private couriers to operate commercial document services, which include a) unsealed freight-attached documents or dispatch notes, b) trade-related documents, c) foreign capital or technology-related documents, and d) foreign exchange or its related documents.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또는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Annex7-A-4/A/ II /1/A/b/MA	1)2)3) (a) Only a <i>gae-in-sa-mu-so</i> (sole proprietorship), a <i>gam-sa-ban</i> (auditing task force) or a <i>hoe-gye-boep-in</i> (accounting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established in Korea by a <i>gong-in-hoe-gye-sa</i>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gistered unde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may supply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i>Korean-registered</i>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not permitted to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1)2)3) (a)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리를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1)2)3) (a)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Annex7-A-4/A/ II /1/A/c/MA	1)2)3) (a) Only a <i>se-mu-ga-su-so</i> (sole proprietorship), a <i>se-mu-jo-jeong-ban</i> (tax reconciliation task force) or a <i>se-mu-boop-in</i> (tax agency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established in Korea by a <i>se-mu-se</i>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 registered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may supply <i>se-mu-na</i> (<i>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i>) services, including tax reconciliation services and tax representative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i>Korean-registered</i> certified tax accountant may not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1)2)3) (a) 세무서법에 따라 자리를 취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세무사 자리를 가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1)2)3) (a) 세무서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Annex7-C/EU/31/Condition	To enable persons who are or become subject to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u>to maintain their social security rights if they mov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or to acquire such rights.</u>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이 될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사회보장권을 취득한 경우 사회보장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이 될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사회보장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권리로 취득하기 위한.
Annex7-G/Kor/12/Description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persons of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i>human health services</i> .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the preferential measures provided in the <i>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i> (Law No. 9218, December 26, 2008), and the <i>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i> (Law No.9526, March 25, 2009) relating to establishment of medical facilities, pharmacies, and similar facilities, and the supply of remote medical services to those geographical areas specified in those Acts.	대한민국은 사람을 인간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로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818호, 2008.12.2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무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818호, 2008.12.2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무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Provisions	English text	Chinese/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C/EU/1/Description	<p>The European Union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deriving from a specific provision found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to which the European Union is a Party and according to which the European Union may amend any measu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obligations on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in thes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p>	<p>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별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재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유보함). 유럽연합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경이 그 협정의 시장 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모든 조치를 개경할 수 있음.</p>	<p>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별 규정, 즉 유럽연합이 어떤 조치의 개경이 그려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 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경적전에 존재하였던 학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경할 수 있다 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재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p>
Annex7-C/Kor/2/Description	<p>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deriving from a specific provision found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to which Korea is a Party and according to which Korea may amend any measu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obligations on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in thes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p>	<p>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별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 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재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유보함). 대한민국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경이 그 협정의 시장 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모든 조치를 개경할 수 있음.</p>	<p>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별 규정, 즉 대한민국이 어떤 조치의 개경이 그려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경적전에 존재하였던 학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경할 수 있다 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재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p>
Annex7-A-1/All sectors/Real estate	<p>RO: Natural persons not having Romanian citizenship and residence in Romania, as well as legal persons not having Romanian nationality and their headquarters in Romania, cannot acquire ownership over any kind of land plots, through <u>inter vivos</u> note.</p>	<p>루: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분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u>증여법률</u>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p>	<p>루: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분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u>생전행위</u>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p>
Annex7-A-2/All sectors/Real estate			
Annex7-A-1/4/C/footnote 27	<p>Retail sales of pharmaceutical, medical and orthopaedic goods are to be found under PROFESSIONAL SERVICES in 1.A.k).</p>	<p>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의 <u>도매는</u> 1.A.k)의 전문직서비스에 기재됨.</p>	<p>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의 <u>소매는</u> 1.A.k)의 전문직서비스에 기재됨.</p>
Annex7-A-1/7/A			
	<p>AT: Promotional activity and intermediation on behalf of a <u>subsidiary</u> not established in the European Union or of a branch not established in Austria (except for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are prohibited. Compulsory air insurance, <u>except for insur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can be underwritten only by a subsidiary</u> established in the European Union or by a branch established in Austria. Higher premium tax is due for insurance contracts (<u>except for contracts on reinsurance and retrocession</u>) which are written by a subsidiary not established in the European Union or by a branch not established in Austria. Exception from the higher premium tax can be granted.</p>	<p>오: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을 대표하여 모집 활동 및 중개를 하는 것은 금지됨(재보험 및 재재보험은 제외). 국제 산업적 핵심운송을 제외하고 강제 항공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지점만이 인수할 수 있음.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이 제작하는 계약(재보험 및 재재보험 계약은 제외)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 보험세를 징수함. 더 높은 프리미엄 보험세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p>	<p>오: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자회사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을 대표하여 모집 활동 및 중개를 하는 것은 금지됨(재보험 및 재재보험은 제외). 국제 산업적 핵심운송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강제 항공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자회사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지점에 의해 인수할 수 있음.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이 제작하는 계약(재보험 및 재재보험 계약은 제외)에 의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이와 같이 보험료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의 적용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p>

Provisions	English text	Edi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1/12/E/d)	... <u>may be required</u> 요구됨.	... 요구될 수 있음.
Annex7-A-4/11/C/Rental of aircraft with crew MA, NT 1(2), 3)			
Annex7-A-2/17/E/a)/EU Annex7-A-2/17/E/b)/PL	... The number of service suppliers in each airport <u>can be limited, due to available space constraints, and to not less than two suppliers for other reasons.</u>	...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한 및 다른 이유로 2개의 공급자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한을 이므로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2개 이상의 공급자로 제한될 수 있음.
Annex7-A-1/1/A/k)	... and <u>other</u> services supplied by pharmacists	...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Annex7-A-3/6/A/k)			
Annex7-A-4/A/ I /All Sectors/NT	3)(b) ... - land used for supplying services during the course of normal business activities; - land use for housing senior company personnel under pertinent law; or - land used for fulfilling land-holding requirements stipulated by pertinent laws	3)(b) ...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3)(b) ...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 해당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Annex7-A-4/A/ II /7/footnote 38	... Notwithstanding the headnote above,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re considered to be financial service suppliers covered by Chapter Seven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that are regulated by the FSC.	... 위의 두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제7장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됨.	... 위의 두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제7장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됨.
Annex7-A-4/A/Attachment II /1/(j)	Humanities: college transfer, public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accounting, statistics, and <u>public service examination</u>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선택고시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선택고시
Annex7-A-2/All Sectors/Types of establishment/SE	... with a duration of <u>less than</u> a year 1년 미하의 존속기간을 가진 1년 미하의 존속기간을 가진 ...
Annex7-A-4/A/ II /1/E/c/footnote 11	... for <u>less than</u> 15 passengers 15인승 미하의 15인승 미하의 ...
Annex7-A-3/All Sectors/Scope of intracorporate transferees/BG	... <u>less than</u> 100 persons 100명 미하의 100명 미하의 ...
Annex7-A-2/All Sectors/Types of establishment	SK : A Korean natural person whose name <u>is to be registered</u> in the Commercial Register as a person authorised to act on behalf of the entrepreneur <u>to required to submit</u> residence permit for Slovakia.	슬 : 기업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인으로 상업 등기소에 그 이름 <u>이 등록된</u> 대한민국의 자연인은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 허가를 제출할 것 <u>이 요구됨.</u>	슬 : 기업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인으로서 상업 등기소에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자연인은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 허가를 제출하는 것 <u>이 요구됨.</u>
Annex7-A-1/12/C/d)	d) <u>Pushing and towing services</u> EU: Unbound for <u>pushing and towing services</u> .	d) <u>에션서비스</u> 유: 에션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d) <u>화물일환서비스</u> 유: 화물일환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Annex7-A-2/17/C/d)	d) <u>Pushing and towing services</u>	d) <u>에션서비스</u>	d) <u>화물일환서비스</u>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1/All Sectors/Real estate	FI: (<u>Aland Islands</u>): Restrictions on the right for natural persons who do not enjoy regional citizenship in <u>Aland</u> , and for juridical persons, to acquire and hold real property on the <u>Aland Islands</u> without permis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u>Islands</u> .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establishment and the right to provide services by natural persons who do not enjoy regional citizenship in <u>Aland</u> , or by any juridical person, without permis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u>Aland Islands</u> .	민 : (<u>아랜드(Aland) 섬</u>): 아랜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아랜드(Aland) 섬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아랜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민: (<u>올란드(Aland) 제도</u>): 올란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올란드(Aland) 제도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올란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Annex7-A-2/All Sectors/Real estate	FI: (<u>Aland Islands</u>): Restrictions on the right for natural persons who do not enjoy regional citizenship in <u>Aland</u> , and for juridical persons, to acquire and hold real property on the <u>Aland Islands</u> without permis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u>Islands</u> .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establishment and the right to provide services by natural persons who do not enjoy regional citizenship in <u>Aland</u> , or by any juridical person, without permis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u>Aland Islands</u> .	민 : (<u>아랜드(Aland) 섬</u>): 아랜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아랜드(Aland) 섬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아랜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민: (<u>올란드(Aland) 제도</u>): 올란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올란드(Aland) 제도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올란드(A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Annex7-A-2/All Sectors/Geographical Zones	FI: In the <u>Aland Islands</u> , limitations on the right of establishment by natural persons who do not enjoy regional citizenship in <u>Aland</u> or by any juridical person without permis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u>Aland Islands</u> .	민 : 아랜드 섬에서는, 아랜드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아랜드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는 법인의 설립권에 제한이 있음.	민 : 올란드 제도에서는, 올란드에서 지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올란드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는 법인의 설립권에 제한이 있음.
Annex7-A-1/7/A	DK: ... No persons or companies (<u>including insurance companies</u>) may, for business purposes in Denmark, assist in effecting direct insurance <u>for persons resident in Denmark</u> , for Danish ships or for property in Denmark, other than insurance companies licensed by Danish law or by Danish competent authorities.	덴 : ... 덴마크 또는 덴마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민사를 부여한 보험회사 외에는,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인 또는 회사도, 덴마크 내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덴마크 선박 또는 덴마크 내 재산에 대하여 덴마크 거주자를 위한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조력할 수 없음.	덴 : ... 덴마크 또는 덴마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민사를 부여한 보험회사 외에는, 어떠한 인 또는 회사(보험회사를 포함)도, 덴마크 내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덴마크 거주자, 덴마크 선박 또는 덴마크 내 재산에 대하여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조력할 수 없음.
Annex7-A-1/11/B	EU: Measures based upon existing or future agreements on access to inland waterways (incl. agreements following the Rhine-Main-Danube link) reserve some traffic rights to operators based in the countries concerned and meeting nationality criteria <u>regarding ownership</u> .	유: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리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에게 운수권 일부를 유보함.	유: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리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에게 운수권 일부를 유보함.
Annex7-A-1/2/A	(part of CPC 751, part of CPC 71235 ²⁰ and part of CPC 73210 ²¹)	(CPC 751의 일부, CPC 71235의 일부 ²⁰ , CPC 73210의 일부 ²¹)	(CPC 751의 일부, CPC 71235 ²⁰ 의 일부, CPC 73210 ²¹ 의 일부)
Annex7-A-2/7/A	(part of CPC 751, part of CPC 71235 ²² and part of CPC 73210 ²³)	(CPC 751의 일부, CPC 71235의 일부 ²² , CPC 73210의 일부 ²³)	(CPC 751의 일부, CPC 71235 ²² 의 일부, CPC 73210 ²³ 의 일부)
Annex7-A-2/6/A/j)2	AT: ... nurses, physiotherapists, <u>occupational therapists</u> , logotherapists, dieticians and nutricians.	오: ...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실증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오: ...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실증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Annex7-A-3/6/A/j)2	3. Use of firm name is permitted, provided that it is used with reference to " <u>Foreign Legal Consultants Office</u> " in Korean.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단,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단,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Annex7-A-4/A/ II /1/A/a/Additional Commitments			
Annex7-C/Kor/3	(c) computer reservation system (<u>CRS</u>) services; <u>and</u>	(c) 컴퓨터예약시스템(<u>CRS</u>)서비스	(c) 컴퓨터예약시스템(<u>CRS</u>)서비스, 그리고
Annex7-A-1/14/A/footnote 41	... <u>workover</u> and <u>well repair services</u> and plugging and abandoning of wells.	... 개수 및 유전 부수 서비스 그리고 유전 충전 및 폐쇄	... 개수 및 유전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전 충전 및 폐쇄

Provisions	Original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1/10/A	BG: Unbound, except for theatrical producer, singer group, band and orchestra entertainment services (CPC 96191); <u>services provided by authors, composers, sculptors, entertainers and other individual artists (CPC 96192)</u> ; and ancillary theatrical services (CPC 96193).	불: 극장 공연을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CPC 96192), 그리고 극장 부수 서비스 (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포함.	불: 극장 공연을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 96192), 그리고 극장 부수 서비스 (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포함.
Annex7-A-4/A/ II /4/B/MA/3)/(a)	wholesale trade of used cars, and	중고자동차 도매업	중고자동차 도매업 그리고
Annex7-A-4/A/ II /1/A/b/MA/(b)/(ii)/a)	... and		... 그리고
Annex7-A-4/A/ II /1/A/c/MA/(b)/(ii)/a)			
Annex7-A-4/A/ II /4/footnote 24/(c)/(ii)			
Annex7-A-4/A/ II /7/B/MA/1)/(a)			
Annex7-A-4/A/ II /7/B/NT/1)/(a)			
Annex7-A-4/A/ II /7/headnote/9	... the right not to consider <u>any</u> "compulsory" third-party insurance service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	...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
Annex7-A-4/N II /5/D/MA/3)/(a)/footnote 33	For purposes of this limitation, "hap-won(private teaching institutes for adults)" are ...	성인대상 학원"이란 ...	성인 대상 교육기관"이란 ...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4/A/ II /5/C/footnote 27	Specific commitment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through any mode of supply shall not be construed to apply to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degrees for the purpose of admission,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Korea.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 접근과 내국인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적 실무수행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 접근과 내국인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적 직업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Annex7-A-4/A/ II /5/D	(ii)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u>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and the Seafarers Act;</u>	(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른 정부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Annex7-A-4/B/All Sectors/Investment	Unbound for measures with respect to investments in the defense industry. Foreign investors who intend to acquire the outstanding shares of defense industry other than the newly issued ones shall obtain a prior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만함. 신규발행된 공모주 외에 방위산업의 공모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만함. 신규발행된 공모주 외에 방위산업의 공모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u>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u>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Annex7-C/EU/5/Description	Measures that are taken under existing or future agreements, and which reserve or limit <u>the provision of transport services</u> and specify operating conditions, including transit permits and/or preferential road taxes of a transport services into, in, <u>across</u> and out of the Czech Republic to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체코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을 <u>지나는</u> 운송서비스 그리고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세액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u>운송서비스를</u>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체코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을 <u>통과하는</u> 운송서비스 그리고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세액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u>운송서비스 공급을</u>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Annex7-C/EU/12/Description	Measures that are taken under existing or future agreements, and which reserve or limit <u>the provision of transport services</u> and specify operating conditions, including transit permits and/or preferential road taxes of a transport services into, in, <u>across</u> and out of <u>Slovakia</u> to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송서비스 그리고 슬로바키아로부터 관련 세액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u>운송서비스를</u>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송서비스, <u>슬로바키아를 통과하는</u> 운송서비스 그리고 슬로바키아로부터 관련 세액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u>운송서비스 공급을</u>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Annex7-A-4/A/ II /11/H	Services Auxiliary to all Modes of Transport	운송 부수 서비스	모든 형태의 운송 부수 서비스
Annex7-A-1/7/8	SI: (a) ... Treasury bonds ... (b) All other sub-sectors, except participation in issue of Treasury bonds, pension fund management,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u>advisory and other auxiliary financial services</u> : Unbound except accepting credits (borrowing of all types), and accepting guarantees and commitments from foreign credit institutions by domestic legal entities and sole proprietors. ...	비: (a) 재무부債권의 ... (b) 재무부債권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기타 부수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 분야 : 신용(모든 종류의 차용)의 수취, 그리고 국내의 법적 실체 및 1인기업의 외국 신용기관으로부터의 보증 및 약정의 인수를 제외하고 약속 만함. ...	비: (a) 국채의 ... (b) 국채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자문 및 기타 부수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 분야 : 신용(모든 종류의 차용)의 수취, 그리고 국내의 법적 실체 및 단독소유기업의 외국 신용기관으로부터의 보증 및 약정의 인수를 제외하고 약속 만함. ...
Annex7-A-3/All Sectors/Recognition	EU: European Union directives on mutual recognition of diplomas only apply to the citizens of the European Union. The right to practise a regulated professional service in one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does not grant the right to practise in another Member State.	유: 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적용됨. 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서 규제되는 전문직서비스 영업을 할 권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유: 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적용됨.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서 규제되는 전문직서비스 영업을 할 권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4/A/ II /7/A/MA	2) Unbound except for ... (c)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u>consultancy</u> , risk assessment, actuarial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c) <u>컨설팅</u> ,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c) <u>설문</u> ,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Annex7-A-4/A/ II /7/A/NT			
Annex7-C/EU/4/footnote 1	With regard to Austria the part of the MFN exemption regarding traffic rights covers all countries with whom bilateral agreements on road transport or other arrangements relating to road transport exist or may be desirable.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운수권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 부분은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간 협정 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u>의 의 조건</u> 가 바람직한 모든 국가에 적용됨.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운수권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 부분은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간 협정 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국가에 적용됨.
Annex7-A-4/A/ II /2/B/MA	3) ...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acquiring an existing domestic courier services supplier does not need to obtain a new trucking business license provided that the acquirer operates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u>set out in the acquiree's license</u> .	3)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서비스 사업자를 인수하는 자는 <u>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와 관련한 동일한 조건</u>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u>코로체양부증권으로부터 신규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u> .	3)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서비스 사업자를 인수하는 자는 <u>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u>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u>신규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u> .
Annex7-C/EU/35/footnote 3	Provided that these countries were <u>OECD</u> and NATO members before 20 June 1996.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20일 이전에 <u>경제개발협력기구</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20일 이전에 <u>경제협력개발기구</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정함.
Annex7-A-4/A/ II /7/B/MA	1) Unbound except for: ... (c)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excluding intermediation. This commitment applies to the supply of credit rating,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u>general fund administration</u> , indirect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and bond appraisal with regard to securities issued in Korea only to the extent that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This commitment does not apply to (i) credit rating of enterprises <u>In Korea</u> ; or (ii)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undertaken for purposes of lending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with respect to individuals or companies <u>In Korea</u> . Once Korea allows the supply of certain of these services, it may not subsequently prohibit or limi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u>일반사무관리</u> ,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u>대한민국</u>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u>대한민국</u>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u>일반판드사무관리</u> ,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u>대한민국</u>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u>대한민국</u>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
Annex7-A-4/A/ II /7/B/NT			
Annex7-A-4/A/ II /7/B/MA	1) Unbound except for: ... (c)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excluding intermediation. This commitment applies to the supply of credit rating,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u>general fund administration</u> , indirect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and bond appraisal with regard to securities issued in Korea only to the extent that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This commitment does not apply to (i) credit rating of enterprises <u>In Korea</u> ; or (ii)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undertaken for purposes of lending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with respect to individuals or companies <u>In Korea</u> . Once Korea allows the supply of certain of these services, it may not subsequently prohibit or limi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u>일반사무관리</u> ,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u>대한민국</u>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u>대한민국</u>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u>동의할 수 있음</u> .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u>일반판드사무관리</u> ,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u>대한민국</u>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u>대한민국</u>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
Annex7-A-1/7/B	RO: ... Payments and <u>money transmission</u> services ...	루: ... 지금 및 <u>외전</u> 서비스는 ...	루: ... 지금 및 <u>송금</u> 서비스는 ...
Annex7-A-2/12/A	SI: ... <u>consultancy</u> and <u>claim settlement</u> services ...	비 : ... <u>자문</u> 서비스 및 <u>결구결산</u> 서비스에 ...	비 : ... <u>설문</u> 서비스 및 <u>손해사정</u> 서비스에 ...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2/All Sectors/Types of establishment	PL: ... <u>limited partnership</u> , ... <u>limited partnership</u>).	풀 : ... <u>한자회사</u> , ... <u>한자회사</u> ...	풀 : ... <u>유한조합</u> , ... <u>유한조합</u> ...
Annex7-A-2/8/A/a)	PL: ... <u>limited partnership</u> .	풀 : ... <u>한자회사</u> .	풀 : ... <u>유한조합</u> .
Annex7-A-2/12/B	IE: ... In the case of an investment <u>limited partnership</u> , at least one <u>general partner</u> must be incorporated in Ireland. To become a member of a stock exchange in Ireland, an entity must either (a) be authorised in Ireland, which requires that it be incorporated or be a <u>partnership</u> , ...	아 : ... 투자 <u>한자회사</u> 의 경우 최소 1인의 <u>일반 파트너</u> 는 아일랜드 내에 법인화해야 함.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실체는 (a) 법인화 또는 제휴를 통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고, ...	아 : ... 무지 <u>유한조합</u> 의 경우 최소 1인의 <u>일반회원사원</u> 은 아일랜드 내에 법인화해야 함.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실체는 (a) 법인화 또는 <u>파트너쉽</u> 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고, ...
Annex7-A-2/12/B	SK: Investment services in Slovakia can be provided by banks, <u>investment companies</u> , <u>investment funds</u> and <u>security dealers</u> which have legal form of <u>joint-stock company with equity capital according to the law</u> (no branches).	슬 : 슬로바키아 내 투자서비스는 은행, 투자회사, 투자펀드 및 법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투자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지닌 증권딜러가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둘가).	슬 : 슬로바키아 내 투자서비스는 법에 따라 자본을 갖춘 투자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지닌 증권딜러, 투자펀드, 투자회사 및 은행이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둘가).
Annex7-A-4/A/ II /7/Headnotes 11	... <u>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u> ... <u>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u> <u>증권예탁결제원</u> ... <u>증권예탁결제원</u> <u>한국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Annex7-A-4/A/ II /7/B/MA/3)	... <u>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u> <u>증권예탁결제원</u> <u>한국예탁결제원</u> ...
Annex7-A-1/7/A/For Modes 1 and 2	OE: Compulsory air insurance policies <u>can be underwritten</u> only by a <u>subsidiary</u> established in the European Union or by a branch established in Germany. ...	독 : 유럽연합에 설립된 <u>현지법인</u> 또는 독일에 설립된 자점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	독 : 유럽연합에 설립된 <u>자회사</u> 또는 독일에 설립된 자점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
Annex7-A-1/All Sectors/Real estate/SI/footnote 4	... <u>subsidiary</u> <u>현지법인</u> <u>자회사</u> ...
Annex7-A-1/7/B/EE			
Annex7-A-1/7/A/For Mode 1/AT, BE, CZ, DE, DK, ES, FI, FR, EL, HU, IE, IT, LU, NL, PT, RO, SK, SE, SI, UK	... the <u>vehicle</u> transporting the goods	... <u>상품을 운송하는 차량</u> <u>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u> ...
Annex7-A-1/7/A/For Mode 1/CY, LV, MT			
Annex7-A-1/7/A/For Mode 1/LT			
Annex7-A-4/A/ II /7/A/MA/1), 2)			
Annex7-A-4/A/ II /7/A/NT/1), 2)			
Annex7-A-2/6/A/b)1	AT : ... <u>equity participation and shares in the operating results of any Austrian legal entity</u> ...	오 : ... <u>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u> 은, ...	오 : ... <u>오스트리아 법인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u> 은, ...
Annex7-A-2/6/A/b)2	AT : ... <u>equity participation and shares in the operating results of any Austrian legal entity</u> ...	오 : ... <u>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u> 은, ...	오 : ... <u>오스트리아 법인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u> 은, ...
Annex7-A-2/6/A/c)	AT : ... <u>equity participation and shares in the operating results of any Austrian legal entity</u> ...	오 : ... <u>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 실체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u> 은, ...	오 : ... <u>오스트리아 법인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u> 은, ...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2/6 /A/b)2	LV : In a commercial company of sworn auditor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capital shares shall be owned by <u>sworn auditors or commercial companies of sworn auditors of the European Union</u> .	라 : 서악감사인 상업회사에서는 <u>서악감사인 또는 유럽연합의 서악감사인 상업회사가</u> 의결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해야 함.	리 : 서악감사인 상업회사에서는 <u>유럽연합의 서악감사인 또는 서악감사인 상업회사가</u> 의결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해야 함.
Annex7-A-2/6 /F/1)2	SE : An economic needs test applies when an investor intends to establish its own terminal infrastructure facilities. Main criteria: space and capacity constraints.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u>능력</u> 제한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u>수용능력</u> 제한
Annex7-A-2/6 /F/1)3	SE : Authorisation for temporary trade in <u>clothing, shoes and foodstuffs that are not consumed at the point of sale</u> may be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스 : <u>의류, 신발 및 판매점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식품의</u> 일시적인 판매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스 : <u>판매점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의류, 신발 및 식품의</u> 일시적인 판매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Annex7-A-2/ 12/A	EL : The right of establishment does not cover <u>the creation of representative offices or other permanent presence of insurance companies</u>	그 : 설립의 권리는 대표 사무소의 설치 또는 그 밖의 보험회사의 상시 주재를 포함하지 아니함. ...	그 : 설립의 권리는 보험회사의 대표 사무소 또는 그 밖의 상설사무소의 설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
Annex7-A-2/ 12/B	EU : ... <u>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sed management company, having its head office and registered office in the same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is required to perform the activities of management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companies</u> .	유 : ... 동일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본점 및 등록은 사무소를 가진 전문 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유 : ...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본점 및 등록은 사무소를 가진 전문 관리 회사를 설립해야 함.
Annex7-A-2/ 12/B	HU : ... The board of a financial institution <u>should include at least two members, who are Hungarian citizens, residents in the meaning of the relevant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nd have permanent residency in Hungary for at least one year</u> .	헝 : ...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최소 2인의 헝가리 시민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외환 규정에 따른 거주를 하고 최소 1년간 헝가리에 영주해야 함.	헝 : ...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헝가리 시민으로서, 관련 외환규정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며 최소 1년이상을 헝가리에 영주해야 은, 최소 2인의 이사를 포함함.
Annex7-A-3/ 4/H	SE: Residency requirement for publishers and owners of publishing and printing companies.	스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기준이 있음.	스 : 출판업자와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준이 있음.
Annex7-A-3/ 12/A	AT : The management of a branch office <u>must consist of two natural persons resident in Austria</u> .	오 : 지점의 경영진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됨.	오 : 지점의 경영진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Annex7-A-4/A/1/All Sectors/MA/3)	Unbound for measures affecting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any state-owned <u>electronic information system</u> that contains <u>proprietary government information</u> or information gathered pursuant to the regulatory functions and powers of the government. ...	국가의 재산권에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 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 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
Annex7-A-4/B/All Sectors/State-Owned National Electronic/Information System	Unbound for measures affecting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any state-owned <u>electronic information system</u> that contains <u>proprietary government information</u> or information gathered pursuant to the regulatory functions and powers of the government.	국가의 재산권에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 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 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nn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4/A/I/A/I Sectors/NA	3) The acquisition of <u>outstanding stocks</u> of existing domestic companies <u>in such areas</u> as energy and aviation by natural persons or juridic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may be restricted.	3)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u>주식</u> 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3)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u>분야</u> 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u>발행주식</u> 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Annex7-A-4/A/II/1/A/a/1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rovided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1. A foreign lawyer who wishes to practice law as Foreign Legal Consultant (FLC) in Korea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register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must have practised law for at least 3 years in the jurisdiction where he or she is qualified as a lawyer, and <u>must be in good standing</u>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e jurisdiction.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 1.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u>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야 함</u> .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 1.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u> 윤리하고 적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u> .
Annex7-A-4/A/II/1/A/b/AC	The following services may be supplied to a Korean accounting firm or office through a membership contract:	크게회계조직의 회원사인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Annex7-A-4/A/II/1/F/r/1)/footnote 14	88442: Screen printing, gravure printing and services related to printing under CPC 88442.	88442 : 스크린인쇄, 그라비어인쇄 및 CPC 88442 <u>종</u> 인쇄 관련 서비스업	88442 : CPC 88442 <u>종</u> 스크린인쇄, 그라비어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Annex7-A-4/A/II/2/B/footnote 16 (Korean text: footnote 17)	For greater certainty,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 the supply of support services to postal offices by <u>military service personnel</u> or other personnel of the equivalent status,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u>군복무자</u>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u>군복무자</u>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 ...

Provisions	English text	English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4/A/II/11/C/Rental of aircraft with crew/MA	1)2) ... By exception, aircraft register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may be leased by an air carrier of the European Union to a Korean air carrier <u>in specific circumstances for the Korean air carrier's exceptional needs, seasonal capacity needs, or needs to overcome operational difficulties, which cannot reasonably be satisfied through leasing aircraft registered within Korea</u> , and subject to obtaining the approval of a limited duration from Korea.	1)2) …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용능력 수요, 또는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 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증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1)2) …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용 능력 수요,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 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증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Annex7-A-4/Attachment 2	2.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re the facilities which have been approved by, registered with or notifi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Act.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가 된 시설을 말한다.
Annex7-8/1/(b)/(ii)	the incorporation of common legislation into the legal order of the parties to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Such alignment or incorporation <u>shall be taking place, and is deemed to take place only from such time that it has been enacted into the domestic legal order of the party or parties to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u>	공동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결합 또는 통합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 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시 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결합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 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Annex7-C/EU/10/Description	Measures taken under existing or future agreements which reserve and/or restrict the supply of these <u>kinds</u> of transportation services and specif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upply, including transit permits and/or preferential road taxes, in the territory of Bulgaria or across the borders of Bulgaria.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그 불가리아 영역에서의 또는 불가리아 국경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u>종류</u> 의 운송서비스 공급을 제한 일/또는 유보하는 조치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그 불가리아 영역에서의 또는 불가리아 국경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u>종류</u> 의 운송서비스 공급을 제한 일/또는 유보하는 조치
Annex7-C/EU/25/Description	The European Union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bilateral or plur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u>involving fisheries in force or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u> .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시행되거나 서명된 수산을 포함한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유럽연합은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시행되는 수산 관련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nnex7-C/EU/14/Description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u>differential treatment</u> to countries under any international agreement <u>in force or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u> .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시행되거나 유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차별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Annex7-C/EU/29/Description	Provision for Cypriot <u>citizens</u> of medical treatment, not available in Cyprus, in selected countries with which bilateral agreements have been signed or will be signed in the future.	양기간 협정이 서명되었거나 미래에 서명될 선택된 국가에서 사이프러스 국민에게 사이프러스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의료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것.	양기간 협정이 서명되었거나 미래에 서명될 선택된 국가에서 사이프러스 국민에게 사이프러스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

Provisions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C/EU/35/Description	<p>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local governments (municipalities), other national entities as well as foreign entities from the countries indicated under column 3),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in Lithuania which are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of European and other integration which Lithuania has embarked on are permitted to acquire, into their ownership, non-agricultural land plot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ir direct activities. The land plot acquisition procedure,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restrictio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law.</p>	<p>리투아니아공화국 지방경부(지방자치단체)의 헌법에 따라, 리투아니아가 개시한 유럽통합 및 그 밖의 통합의 기준을 준수해서 헌법에 따라 명시된 리투아니아에서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외국인 실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내국 실체는,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농경지가 아닌 토지를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 토지취득 절차, 조건 및 규제는 헌법에 따라 설정됨.</p>	
Annex7-C/EU/35/Countries	<p>All countrie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law: Member-states of OECD³, NATO³ and associated countries of EU.</p>	<p>헌법에 따라 결정된 모든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³,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³, 및 유럽연합의 제3국</p>	<p>헌법에 따라 결정된 모든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³,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³, 및 유럽연합의 제3국</p>
Annex7-C/EU/36/Description	<p>In Lithuania, tourist guides from foreign countries can provide tourist guides services only in accordance with bilateral agreements (or contracts) on tourist guides services assistance on a reciprocity basis.</p>	<p>리투아니아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관광안내는 상호주의적으로 관광안내서비스 지원에 관한 양간 협정(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제공될 수 있음.</p>	<p>리투아니아에서, 외국 관광가이드는 관광안내서비스 지원에 관한 양간 협정(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관광안내서비스를 상호주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p>
Annex7-A-1/5/C	FR: ... to establish and <u>direct</u> ...	프 : ... 설립하고 지시하며 ...	프 : ... 설립하고 운영하며 ...
Annex7-A-3/10/A	FR: ... to establish and <u>direct</u> ...	프 : ... 설립 및 지시하고 ...	프 : ... 설립하고 운영하며 ...
Annex7-A-3/10/B	FR: ... to establish and <u>direct</u> ...	프 : ... 설립 및 지시하고 ...	프 : ... 설립하고 운영하며 ...
Annex7-A-3/10/C	FR: ... to establish and <u>direct</u> ...	프 : ... 설립 및 지시하고 ...	프 : ... 설립하고 운영하며 ...
Annex7-A-3/9	9. DISTRIBUTION SERVICES (excluding <u>distribution</u> of arms, munitions and war material)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기타 전쟁 물자의 유통은 제외)
Annex7-A-1/4	4. DISTRIBUTION SERVICES (excluding <u>distribution</u> of arms, munitions explosives and other war material)	4.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기타 전쟁 물자는 제외)	4.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기타 전쟁 물자의 유통은 제외)
Annex7-A-2/List/3	3. ...areas of particular historic and artistic <u>interest</u> ...	3. ...특별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u>흥미</u> 가 있는 지역...	3. ...특별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u>이익</u> 이 있는 지역...
Annex7-A-3/12/A	FI: ... The general agent of a Korean insurance company shall have his place of residence in Finland, unless the company has its head office in the European Union.	핀: ... 달리 회사가 유럽연합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일반 대리업자는 핀란드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핀: ... 달리 회사가 유럽연합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u>총대리인</u> 은 핀란드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Annex7-A-3/6/A/d) and e)	BG: Foreign specialists must have experience of at least two years in the field of <u>construction</u> .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축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Annex7-A-3/6/A/f) and g)			
Annex7-C/EU/7/Description	VAT exemption in Austria is limited to international passenger transport carried out by foreign entrepreneurs by <u>means of motor vehicles</u> registered in the countries indicated in column 3).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세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u>운송수단으로</u> 외국기업가들이 수행하는 국제여객운송으로 제한됨.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세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u>차량으로</u> 외국기업가들이 수행하는 국제여객운송으로 제한됨.

Provisions	Description in English text	Description in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Annex7-A-1/1/E	<u>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u>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nnex7-A-2/6/E	<u>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u>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nnex7-A-3/6/E	<u>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u>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nnex7-A-4/A/ II /1/E	<u>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u>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nnex7-A-4/A/ II /5/C/footnote 29	"School juridical person" means a non-profit juridical person established <u>solely for</u>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education-related laws.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학교법인" 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 List: List of Commitments in Conformity with Article 7.13

* MA: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 NT: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 AC: Additional Commitments

Description: Description of measure indicating its inconsistency with Articles 7.8 and 7.14

* Country: Countries to which the measure applies

* Condition: Conditions creating the need for the exemption

3. Annexes II and II(a) of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HS Heading (column)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0901(2) <i>PSN2</i>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coffee husk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비율불문)한 커피대용
ex0902(2); ex 1302(2); ex Chapter 62(2) <i>P62 2</i>	...except for 다음을 제외함
1501(3)	Manufacture from meat or edible offal of swine of heading 0203 or 0206 or of meat and edible offal of poultry of heading 0207. However bones of heading 0506 may not be used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의 돼지의 육과 식용 첨육, 또는 제0207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첨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의 돼지의 육 또는 식용 첨육, 또는 제0207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첨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1509 and 1510(3)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vegetabl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	사용된 모든 식물성 기름의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904(3)	- in which all the cereals and flour of Chapter 10 and 11 (except durum wheat and <u>Zea indurate maize</u> , and their derivatives) used are wholly obtained, and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과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과 경밀종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2009(2)	Fruit juices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향,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향,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첨가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ex 2103(3)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However, mustard flour or meal or prepared mustard may be used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겨자의 분·조분은 사용될 수 있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겨자의 분·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될 수 있음.
ex 2301(2)	Whale meal;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고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고래 조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402(3); 2403.10(3)	Manufacture in which at least 70% by weight of the unmanufactured tobacco or tobacco refuse of heading 2401 used is originating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와 담배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또는 담배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ex 2932(2)	- Internal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u>sulphonated</u> , <u>nitrated</u> or <u>nitrosated derivatives</u> - Cyclic acetals and internal hemiacetals and their halogenated, <u>sulphonated</u> , <u>nitrated</u> or <u>nitrosated derivatives</u>	-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황산화유도체 및 질산염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원식아세탈과 내연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황산화유도체 및 질산염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u>솔폰화유도체</u> , <u>니트로화유도체</u> 또는 <u>니트로소화유도체</u> - 원식아세탈과 내연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u>솔폰화유도체</u> , <u>니트로화유도체</u> 또는 <u>니트로소화유도체</u>
2933(2)	Heterocyclic compounds with nitrogen hetero-atom(s) only	질소테로고리 화합물	질소헤테로원자로만 이루어진 헤테로고리 화합물

HS Heading (column)	Existing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3001(2)	Glands and other orga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heparin and its salts; other human or animal substances prepared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기관(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한다)기타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기관(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한다)선, 기타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ex 3404(2)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 with a basis of paraffin, petroleum waxes, waxe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u>slack wax or scale wax</u>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루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재로 한 것)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슬랙왁스 또는 스케일왁스를 기재로 한 것)
3806.30(3)	Manufacture from <u>resin acids</u>	수지산염으로부터의 생산	수지산으로부터의 생산
ex 3821.00(2)	Prepared culture media for maintenance of <u>micro-organisms</u> (including viruses and the like) or of plant, human <u>or</u> animal cells	미생물용(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 인간, 동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ex 4012.11, ex 4012.12, ex 4012.13, and ex 4012.19(2)	-Retreaded pneumatic, solid or cushion tyres, <u>of rubber</u>	-재생 고무 타이어 (슬리드 또는 쿠션 타이어에 한한다)	-고무제의 재생 공기타이어 (슬리드 또는 쿠션 타이어에 한한다)
ex 4302.30(3)	Bleaching or dyeing, in addition to <u>cutting and assembly</u> of non-assembled tanned or dressed furskins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되거나 완성 가공된 모피의 조합 또는 절단 외에 추가한 표백 또는 염색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되거나 완성 가공된 모피의 조합 및 절단에 추가한 표백 또는 염색
ex 4407(2)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d or peeled, of a thickness exceeding 6 mm, <u>planed, sanded or end-jointed</u>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ex 4408(2)	Sheets for veneering (including those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and for plywoo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 mm, <u>spliced, and other wood</u> sawn lengthwise, sliced or peel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 mm, planed, sanded or end-jointed	베니어용 단판(직총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판(길이의 방향으로 풀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베니어용 단판(직총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판(아이밸인 것), 기타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풀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ex 4408(3)	<u>Splicing, planing, sanding or end-jointing</u>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ex 4410 to ex 4413(2)	Beadings and mouldings, including <u>moulded skirting</u> and other moulded boards	구슬형기공품·주형기공품(구슬형기공된 스커팅 및 주형기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구슬형기공품·주형기공품(주형기공된 스커팅 및 주형기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HS Heading (column)	Existing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5007(3); 5111 to 5113(3); 5208 to 5212(3); 5309 to 5311(3); 5407 and 5408(3); 5512 to 5516(3); ex Chapter 58(3); 5903(3); 5905(3); 5907(3); ex Chapter 62(3); Annex II(a) 5408(3)	... accompanied by 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such as <u>scouring</u> , bleaching, mercerising, heat setting, raising, <u>calendering</u> , <u>shrink resistance processing</u> , permanent finishing, <u>decatising</u> , impregnating, <u>mending</u> and burling),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밤죽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성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밤죽가공, 영구마감처리, 침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
5204 to 5207(2)	Yarn and thread of cotton	면의 사 또는 실	면의 사 및 실
Annex II(a) 5207(2)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put up for retail sale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은 해당한다)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501 to 5507(2)	Man-made staple fibres	인조 스테이플사	인조 스테이플섬유
5602(3); Chapter 57(3)	... of which the denomination in all cases of <u>a single filament or fibre is less than 9 decitex</u> ,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4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의 경우, 단일 설유나 필라멘트가 9데시텍스 이하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설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Chapter 57(3)	'—polypropylene fibres of heading 5503 or 5506. Manufacture from: - natural fibres, - man-made staple fibres made from casein, or -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설유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설유
5602(other)(3)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설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설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5906(2)	- Other fabrics made of synthetic filament yarn, containing <u>more than 90 % by weight of textile materials</u>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상을 함유한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u>초과</u> 함유한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Chapter 61(3)	Spinning of natural and/or man-made staple fibres, or extrusion of man-made filament yarn, accompanied by knitting (knitted to shape products) or Knitting and making up including cutting (assembling, two or more pieces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 which have been either cut to form or obtained directly to form)	또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 스테이플사 및/또는 인조스테이플사의 방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 스테이플섬유 및/또는 인조스테이플섬유의 방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는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	편직 및 절단을 포함한 제조(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

HS Heading (column)	English text (column)	Existing Korean text (column)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column)
ex 6217(2) Interlinings for collars and cuffs, <u>cut out</u>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ing accessori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212: Interlinings for collars and cuffs, <u>cut out</u>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칼라, 커프스 및 컷아웃 의 싱감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단된 칼라, 커프스의 싱감
6301 to 6304(3)	Manufacture from unbleached single yarn or Manufacture from unembroidered fabric (other than knitted or crocheted), provided that <u>the value of the unembroidered fabric used does not exceed 4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u>	-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6306(2)	-Of nonwovens	-비직조의 것	-부직포의 것
Chapter 67(2)	Prepared feathers and down and articles made of feathers or of down;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조제우모와 쟁털 및 고제풀, 조화, 인모제품	조제우모와 새의 쟁털 및 우모와 새의 쟁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ex 6803.00(2)	Articles of slate or of agglomerated slate	슬레이트 또는 절적된 슬레이트의 제품	슬레이트 또는 음결 슬레이트 제품
ex 6814(2)	Articles of mica, <u>including agglomerated or reconstituted mica, on a support of paper, paperboard or other materials</u>	운모 제품(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된 음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한다)	운모 제품(음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된 것)
7006(2)	- Glass-plate substrates, coated with a dielectric thin film, and of a semiconductor grade in accordance with SEMII-standards	- 절연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준에 따른 반도체 등급의 유리판 토대	- 유플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준에 따른 반도체 등급의 유리판 토대
ex 7019(2)	Articles (other than yarn) of glass fibres	유리섬유(단사 제외) 제품	유리섬유 제품(유리사 제외)
ex 7019(3)	-uncoloured slivers, rovings, yarn or chopped strands,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단연사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또는 단연사
7207(2); 7208 to 7216(2); 7217(2)	...of iron or non-alloy steel	철 및 비합금 강철의...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7225 to 7228(3)	Manufacture from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or semi-finished products of heading 7206, 7207, 7218 or 7224	제7206, 7207, 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206, 7207, 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의 생산
7307.21 to 7307.29(2)	Tube or pipe fittings of stainless steel	스테인리스 강철의 관 연결구류	스테인리스 강의 관 또는 연결구류
7308(2)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heading 9406)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lock-gate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shutte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of iron or steel; plates, rods, angles, shapes, section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of iron or steel	철강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물을 제외한다) 및 구조물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 둘, 문과 창 및 이들의 문지방, 서터, 난간, 기둥);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재의 판, 대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철강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물을 제외한다) 및 구조물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 둘, 문과 창 및 이들의 문지방, 서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재의 판, 대, 봉, 형재, 조각,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HS Heading (column)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7616.99(1)	7616.99	7619.99	7616.99
7616.99(3)	Manufacture from <u>materials</u> of any heading	모든 호의 재료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u>재료</u> 로부터의 생산
8206(3)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ose of headings 8202 to 8205. However, tools of headings 8202 to 8205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u>set</u> , provided that their <u>total value</u> does not exceed 15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set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도구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구는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도구의 <u>총 가치</u> 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구는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8207.40 to 8207.90(2)	Tools for tapping or threading; tools for drilling, other than for rock-drilling; tools for boring or broaching; tools for milling; tools for turning; other interchangeable tools	탭핑, 드레딩용 공구 드릴링(착암용 제외)용 공구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 밀링용 공구 터닝용 공구 기타 호환성공구	탭핑 또는 드레딩용 공구, 드릴링(착암용 제외)용 공구, 보링 또는 브로칭 용 공구, 밀링용 공구, 터닝용 공구, 기타 호환성공구
8211.10 to 8211.93; 8211.95(2)	Knives with cutting blades, serrated or not (including pruning knives), other than knives of heading 8208	톱니 모양 봉문의 칼과 절단용 칼날(전자용 칼을 포함한다)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봉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전자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
8401(2)	Nuclear reactors; fuel elements(<u>cartridges</u>), non-irradiated, for nuclear reactors;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8432(2)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 forestry machinery for soil preparation or cultivation; lawn or sport-ground rollers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와 잔디 또는 운동장 퀼러(토양 준비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 준비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퀼러
8433(2)	Harvesting or threshing machinery, including straw or <u>fodder balers</u> ; grass or hay mowers;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eggs, fruit or other agricultural produce, other than machinery of heading 8437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결소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조란, 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 결속기류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조란, 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8459(2)	Machine tools (including way-type unit head machines) for drilling, boring, milling, threading or tapping by removing metal, other than lathes (including turning centres) of heading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헤드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보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헤드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보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60(2)	Machine tools for deburring, sharpening, grinding, honing, lapping, polishing or otherwise finishing metal or cermets by means of grinding stones, abrasives or <u>polishing products</u> , other than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machines of heading 8461	디버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래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고마트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 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디버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래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 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1(2)	Machine tools for planing, shaping, slotting, <u>broaching</u> ,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sawing, cutting-off and other machine tools working by removing metal or cerme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플레이닝용, 쇄이핑용, 솔로팅용, 부로치용, 기어절삭기용, 기어연삭용, 기어 완성가공용, 폭질용,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플레이닝용, 쇄이핑용, 솔로팅용, 부로치용, 기어절삭용, 기어연삭용, 기어 완성가공용, 폭질용,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8463(2)	Other machine tools for working metal or cermets, without removing material	재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HS Heading (column)	English text	Edi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8467(2)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hydraulic or with self-contained electronic or non-electronic motor	수지식 공구(압축 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한다)	수지식 공구(압축 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한다)
8469(2)	Typewriters other than printers of heading 8443; word-processing machines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 기계(제8443호의 프린터는 제외한다)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는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 기계
8474(2)	<u>Machinery for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washing, crushing, grinding, mixing or kneading earth, stone, ores or other mineral substances, in solid (including powder or paste) form; machinery for agglomerating, shaping or moulding solid mineral fuels, ceramic paste, unhardened cement, plastering materials or other mineral products in powder or paste form; machines for forming foundry moulds of sand</u>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흐름기, 반죽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아니한 시멘트, 석고,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물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흐름기, 반죽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과기, 형입기,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아니한 시멘트, 석고, 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물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8511(2)	Electrical ignition or starting equipment of a kind used for spark-ignition or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generators and cut-outs of a kind used in conjunction with such engines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자석발전기,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애일 플러그, 시동전동기)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 발전기,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 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와 개폐기
8515(2)	Electric (including electrically heated gas),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ultrasonic, electron beam, magnetic pulse or plasma arc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machines and apparatus, 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 electric machines and apparatus for hot spraying of metals or cermets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및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 필스식 또는 플라즈마식의 날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 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및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 필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식의 날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 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6(2)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heating apparatus and soil-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and hand dryers; electric smoothing 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heating resisto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5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감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와 헤어컬러, 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열기 및 전열용 저항제.(단, 제 854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미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 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열기 및 전열용 저항제.(단, 제 854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531(2)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for example, bells, sirens, indicator, panels, burglar or fire alarm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12 or 8530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예: 벨, 사이렌, 표시판, 도난 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와 제8532호의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예: 벨, 사이렌, 표시판, 도난 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와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9(2)	Electric filament or discharge lamps, including sealed beam lamp units and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arc lamps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링 램프 유닛과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링 램프 유닛과 자외선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708 to 8711 and 8713 to 8716(2)	Parts and accessories f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and 8711 to 8713; Motorcycles; Works trucks and parts thereof; carriages;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Trailers and semi-trailers and parts thereof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및 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용 부품과 부속, 모터싸이클, 작업차 및 이들의 부분품, 유모차와 그 부분품,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및 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용 부품과 부속, 모터싸이클, 작업차 및 이들의 부분품, 캐리지, 유모차와 그 부분품,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HS Heading (column)	English text	Existing Korean text	Corrections in the Korean text
9022(2)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or of alpha, beta or gamma radiation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X-ray tubes and other X-ray generators, high tension generators, control panels and desks, screens, examination or treatment tables, chairs and the like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을 불문하고 알파, 베타 또는 감마방사능을 사용하는 기기, 방사선사진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포함한다. 엑스선관과 기타 엑스선 발생기, 고압발생기, 제어패널, 책상, 스크린,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 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 고압발생기, 조절반, 스크린,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ex 9603(2)	Brooms and brushes (except for besoms and the like and brushes made from marten or squirrel hair), hand-operated mechanical floor sweepers, not motorized, paint pads and rollers, squeegees and <u>mops</u>	비, 브러쉬(마당비와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와 다람쥐 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모프와 것 먼지떨이,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	비, 브러쉬(마당비와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다람쥐 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스퀴지 및 모프
9506.31 and 9506.39(3); ex 9614(3)	...roughly-shaped blocks일차 성형된 반제품...		...기槎가 성형한 블록상의 것...
Annex II(a) Common provisions 4.	As far as a proof of origin is made out for the derogation on surimi preparations (ex. 제1604.20호의 일부), the proof of origin shall be accompanied by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surimi preparation is composed at least of 40 percent of fish per weight of the product and that <u>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ogramma)</u> species has been used as the primary ingredient of the surimi base.	원산지 증명이 어록 조제품(ex. 제1604.20호의 일부)에 대한 예외율량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록 조제품이 그 제품의 중량 당 최소 40퍼센트의 어류로 구성되고, 멸태 종이 연육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된다.	원산지 증명이 어록 조제품(제1604.20호의 일부)에 대한 예외율량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록 조제품이 그 제품의 중량 당 최소 40퍼센트의 어류로 구성되고, 멸태 종(데리그라 찰코그라마)이 연육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된다.
9608(3)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However, nibs or nib-points of the same heading as the product may be used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될 수 있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 또는 펜촉 포인트는 사용될 수 있음.

(The End)